

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의안번호	21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□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하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 취득 : 1건 5필지 660㎡
- 공유재산 매각 : 1건 1필지 1㎡

3. 재산의 표시

(단위 : 천원, ㎡)

구 분	소 재 지	지 목	전 체 면 적	신 청 면 적	공 시 지 가	비 고
취 득	구평동 159번지 일원(5필지)	임 야	660	660	145,680	토 지
매 각	괴정동 102-8	대	1	1	973	토 지

4. 본 문

-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(안) : 따로 붙임

구평동사 부지 취득

1. 취득대상 재산

(단위 : 천원)

소 재 지	지 목	면 적 (㎡)	재 산 가 액 (공시지가)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구평동 159-1	임	303	63,630	구평동 산38-4	한보철강
구평동 159-2	도	17	3,570	서울시 중구 회현동 194-15	(주) 금호
구평동 159-3	전	300	63,000	해운대구 위동 194-15	이 선 기
구평동 162	전	10	3,870	해운대구 위동 1388-4	은 선 기
구평동 163-5	공장	30	11,610	서구 남부민동 611-180	은 석 기
계		660	145,680		

2. 관련법규

○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항

①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3. 취득사유

○ 구평동사 부지의 감천항 임항도로 편입으로 인한 신축예정 동사부지 확보

4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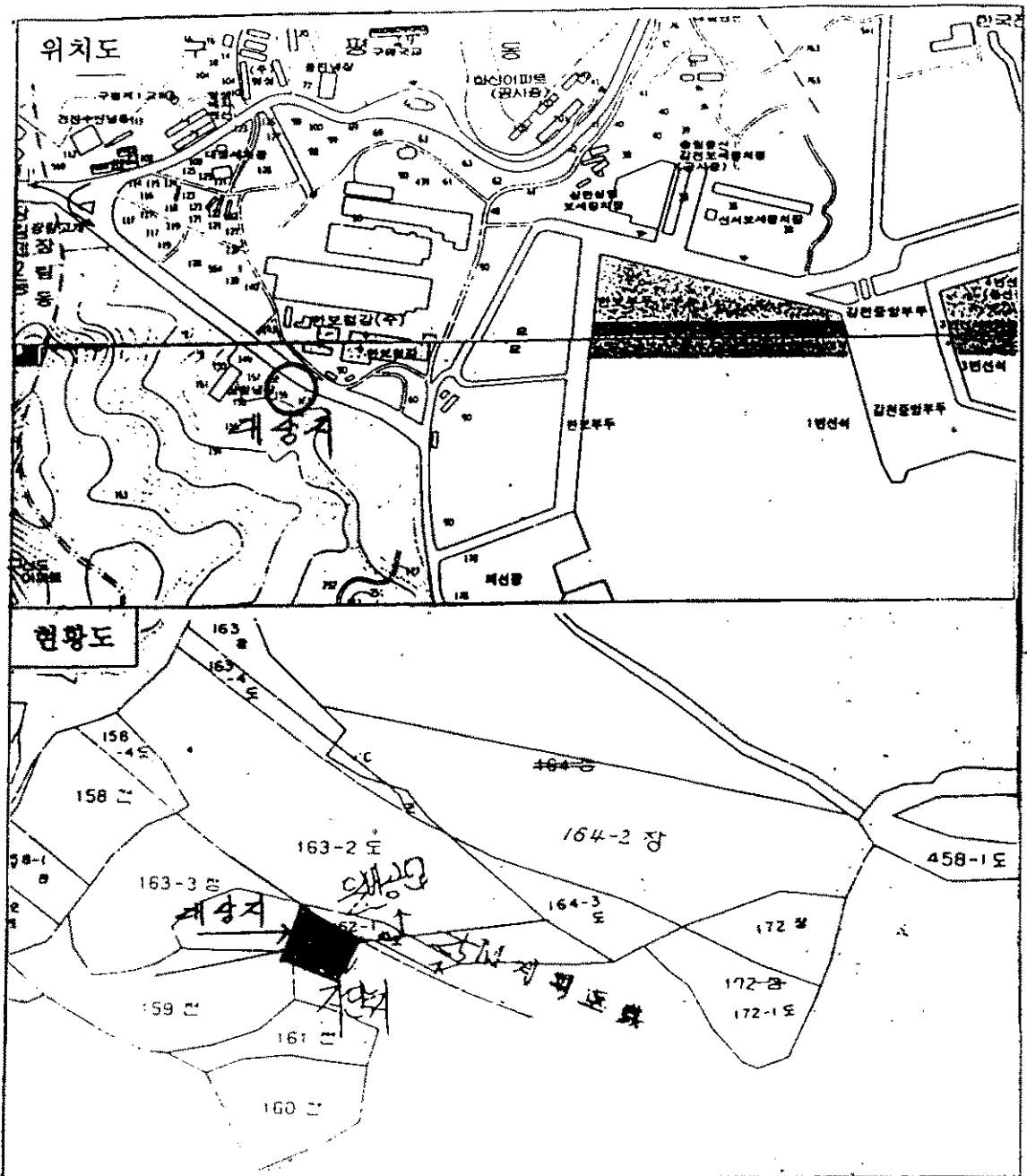
○ 취득시기 : '93. 12월

○ 보상가격 :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후 가격결정(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18조)

5. 위 치 도 : 붙임 참조

위 치 및 현 황 도

(구평동사 구평동 159번지 일원)



※ 해당 위치 및 지번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

— A4 규격으로 2부 제출 후 이재과와 협의하여 200부 작성

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

1. 매각대상 재산

(단위 : 천원, m')

소재지	지목면적	용도지역	공시지가	신청인	
				주소	성명
괴정동 102-8	대	1	일반주거지역	973	괴정2동 101 정영식

2. 관련법규

○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1호

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200㎡이하)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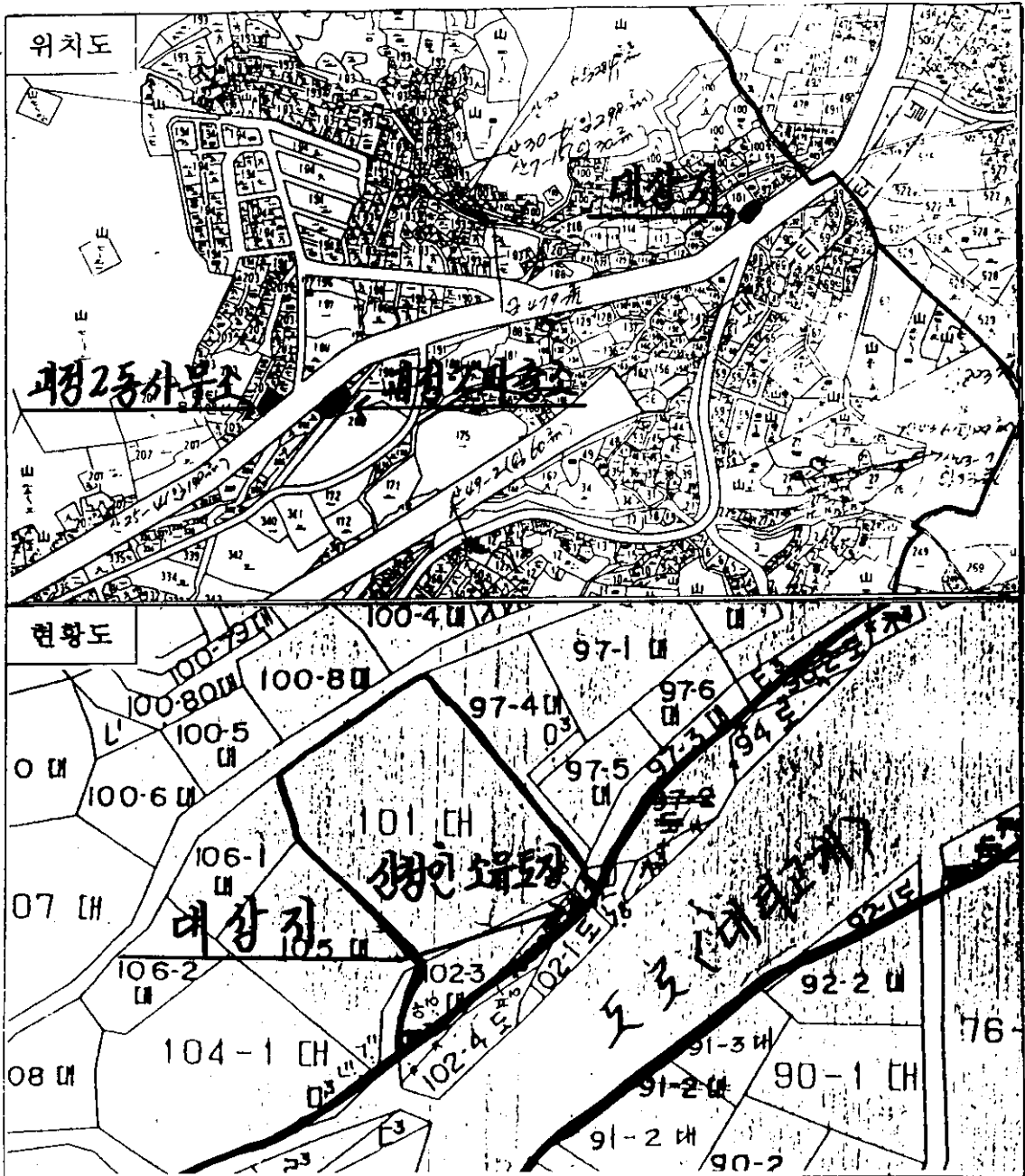
3. 재산의 현황 및 처리의견

- 당초 부산시 소유의 토지로 '92. 3. 23 도로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편입되었으며 '93. 8. 30 사하구로 승계받은 재산임.
-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'81. 4. 30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으며, 재산의 규모,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매각하고자 함.

4. 위 치 도 : 따로 불임

위 치 및 현 황 도

(괴정동 102-8 대 1㎡)



※ 해당 위치 및 지번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

- A4 규격으로 2부 제출 후 이재과와 협의하여 200부 작성